

◆ 기 타

제2024-21호	청문조서 열람 공시송달 공고(강남소방서)	509
제2024-14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510

◆ 정 정

제2024-209호	도시관리계획(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511
------------	--	-----

자치법규 등

[예 규]

◆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168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사무전결규정 일부개정예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사무전결규정’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 현 기 인

2024년 4월 25일

1. 개정이유

’ 24. 3. 26.字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관련 업무 전결규정을 신설하고, 부서간 업무 조정사항의 전결권을 정비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사담당관에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업무 전결규정 신설(별표1)
- 나.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부서 직제순 현행화를 위해 언론홍보실과 의정담당관 순서 수정(별표1, 별표2)
- 다. 인사담당관의 의원 의무신고 사무중 의원 겸직신고·공개에 관한 사항을 의정담당관으로 이관(별표1)
- 라. 의정담당관의 직원 시간외 근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사담당관으로 이관(별표1)
- 마. 의정담당관의 목표관리 추진 사무를 인사담당관으로 이관(별표1)
- 바. 인사담당관의 반부패·청렴 대책 사무중 의원 징계 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삭제(별표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사무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를 별첨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의장 권한에 관한 사무

(개정 2024. 4.)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1. 공통사항						
1. 방 침	1. 주요업무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의 정 담당관
	2. 세부시행계획 수립			○		
	3.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통보·회보 및 변경		○			
2. 문 서	1. 접수문서의 공람					
	가. 의회 관련 주요문서				○	
	나. 기타 일반문서					
	1) 중요사항			○		
	2) 일상 반복적인 경미한 사항		○			
3. 법 규	1. 법령 정비(안) 건의 및 협의			○		법 제 담당관
	2. 조례, 규칙 및 훈령, 예규정비안 방침 결정				○	
	3. 법령, 자치법규의 해석에 대한 질의		○			
	4. 고시문, 공고문의 결정			○		
4.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에 관한 방침				○	의 정 담당관
	2. 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	
	3. 위원회 개최, 안건상정 및 결과 보고			○		
	4.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보고				○	
	5. 의원전체 세미나에 관한 사항 보고				○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5. 공무원 임용 등	1. 공무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인 사 담당관
	가. 5급 이상				○	
	나. 6급 이하			○		
	2. 소속공무원의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				
6. 복 무	1. 출장 명령 및 복명					인 사 담당관
	가. 관 외					
	1) 4급 이상			○		
	2) 5급 이하		○			
	나. 관 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1) 4급 이상			○		
	2) 5급 이하		○			
	2. 연가, 병가, 특별휴가, 공가, 조퇴, 외출의 허가					
	가. 4급 이상			○		
	나. 5급 이하		○			
	3. 특근 명령(승인)			○		
	4. 소속 직원의 당직 변경		○			
2 의정담당관						
1. 의회 운영	1. 의회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 조정				○	
	2. 의전 및 행사					
	가. 행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		
	다. 기념품 및 기념패 제작 관리		○			
	3. 의회운영비 전체예산 확정				○	
	4. 청사관리 운영계획 수립			○		
2. 의정활동 지원	1. 의원의 대외활동 지원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		
	2.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3.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지원			○		
	4. 의원 국제친선교류 추진			○		
3. 의원 신상관련	1. 폐회중 의원 사직서의 처리				○	
	2. 결정된 의원의 사직 허가 및 불허가 통지				○	
	3. 의원 겸직신고 · 공개				○	
4. 의원 교육	1. 의원의 교육연수활동					
	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		
5. 상 훈	1. 의장 명의 표창 수여				○	
	2. 대외기관 표창 상신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6. 총무 및 청사관련	1. 당직근무 명령		○			
	2. 당직근무 일지 관리	○				
	3. 직원 후생시설 관리	○				
	4. 의회관련 비상계획 수립 시행		○			
7. 사무 전결	1. 대상사무 조사 및 심의		○			
	2. 사무전결규정 개정				○	
8. 의정정보화	1. 의정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2. 의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3 언론홍보실						
1. 언론홍보 행정	1. 언론홍보행정 종합계획 수립 조정				○	
	2. 의회보 발간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및 방침 결정				○	
	나. 편집위원회 운영			○		
	다. 발간 및 배포 관리		○			
	3. 의정활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		
	4. 사진, 영상기록의 제작 및 편집					
	가. 운영계획 수립		○			
	나. 촬영 및 편집	○				
	5. 홍보 간행물 편집 발간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발간 배부		○			
	6. 일간신문 스크랩 관리	○				
	7. 의회관련 자료의 편집·발간			○		
	8.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		
	다. 기타 여론조사 관련 일반사항		○			
	9.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가. 홈페이지 운영계획 수립			○		
	나. 홈페이지 관리 및 운용		○			
	10. 의회 참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의회 참관 및 운영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				○	
	나. 의회 참관 우수소감문 시상				○	
	다. 의회 참관 현황 관리		○			
4. 의사담당관						
1. 의사관리	1. 의사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2. 회기 및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의사일정 작성 및 회의소집 공고				○	
	나. 본회의장 의석 배정 및 위원선임				○	
	다. 발언 접수 처리				○	
	라. 의원 청가 및 결석 접수 관리				○	
	마. 시정질문 운영계획 수립				○	
	바. 의장, 부의장, 위원장 선거 계획 수립				○	
	사. 본회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				○	
	3. 본회의장 방청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본회의장 사용 및 방청 허가				○	
	나. 방청 현황 관리		○			
	4. 청소년 의회교실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유관기관 협의 및 의회교실 운영			○		
	5. 인사청문 및 증인출석에 관한 사항					
	가. 인사청문요청서 위원회 회부 및 경과보고서 송부				○	
	나. 행정사무감사, 조사 증인출석 요구				○	
2. 의안 및 의원요구 자료 관리	1. 의안					
	가. 접수 보고 및 위원회 회부				○	
	나. 본회의 보고				○	
	다. 심사보고서 접수				○	
	라. 조례안 등 의결사항 이송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마. 집행기관 등의 처리결과 보고				○	
	바. 철회의 승인				○	
	2. 청원					
	가. 접수 보고 및 위원회 회부				○	
	나. 본회의 보고				○	
	다. 심사보고서 접수			○		
	라. 채택의견서 이송				○	
	마. 집행기관 등의 처리결과 보고				○	
	바. 심사기간 연장 승인				○	
	사. 철회의 승인				○	
	아. 처리 단계별 통지			○		
	3.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가.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 허가				○	
	나. 요구자료 의뢰 및 수집 제출		○			
	4. 서면질문서에 관한 사항					
	가. 서면질문서 접수 보고 및 처리(계획)				○	
	나. 서면질문서 이송 및 수집 송부		○			
3. 법규관리	1. 법규 공포 및 발령					
	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른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공포				○	
	나. 서울특별시의회 훈령·예규 발령 처리		○			
	2. 입법예고안 작성·게재 및 관리		○			
4. 회의록 발간 및 관리	1. 회의록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가. 회의록 불게재 및 자구정정 허가				○	
	나. 보존회의록 및 비공개회의록 열람·복사허가				○	
	다. 공개대상 회의록 원고 열람·복사		○			
	2. 회의록 발간에 관한 사항					
	가. 회의록 발간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		
5. 전문도서관 운영	1. 전문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가.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나. 연도별 세부 운영계획 수립			○		
5. 법제담당관						
1. 입법정책지원	1. 입법 및 정책관련 의정활동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의정활동 지원 사항 모니터링 및 결과분석		○			
	라. 기타 정책연구관련 일반사항		○			
	2.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나. 위원 위촉 및 해촉				○	
	다. 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1) 전체위원회 활동			○		
	2) 소위원회 활동		○			
	3. 의회 관련 연구용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종합평가 계획 수립 · 결과 보고			○		
	4. 의원연구단체 운영 지원					
	가. 의원연구단체 등록 · 취소, 연구활동 계획 심의 · 변경 승인				○	
	나. 연구활동비 지급		○			
	5.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정책 조사 · 분석에 관한 사항		○			
2. 법제지원 및 기타 법제관리	1. 의원 또는 상임위원에서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 · 검토에 관한 사항		○			
	2. 의회관련 쟁송업무 처리					
	가. 소송방침 수립 및 결재				○	
	나. 소송대리인 선임 계약체결 및 위임장 발부		○			
	다. 쟁송관련 지휘 통제			○		
	라. 쟁송사건 주관과 지정		○			
	마. 소송비용 등 지출		○			
	3. 입법 ·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가. 위촉 및 해촉					
	1) 위촉 및 해촉				○	
	2)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제1호에 의한 해촉		○			
	나. 의견 조회(자문)		○			
	다. 고문료 지급		○			
	4. 기타 법제관리에 관한 사항		○			
3. 지방분권 지원	1. 지방분권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주민참여행정	1. 주민조례 발안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운영메뉴얼 작성			○		
	다.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	
	2. 의정모니터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우수의정모니터 표창계획 수립				○	
	라.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심사계획 및 보고		○			
	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처리결과 보고				○	
6. 재정분석담당관						
1.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 분 석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분석결과 및 보고서 제작 발간 등		○			
	2. 주요사업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분석결과 및 보고서 제작 발간 등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3. 재정정책·제도 분석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분석결과 및 보고서 제작 발간 등		○			
	4. 「빅데이터 예산·재정」 분석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분석결과 및 보고서 제작 발간 등		○			
2. 서울시 예산·결산 토론회 개최	1. 예산·결산 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		
3.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1. 공청회·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					
	가. 공청회·토론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	
	나. 공청회·토론회별 개최 계획				○	
	다.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라. 공청회·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			
4. 예산정책연구위원 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	
	2.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	
	3.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세부계획 수립		○			
	4. 예산정책연구위원회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7. 정책지원담당관						
1. 정책지원관 배치	1. 정책지원관 배치에 관한 사항					
	가. 배치 계획 수립				○	
2. 정책지원관 교육	1. 정책지원관 교육에 관한 사항					
	가. 정책지원관 직무교육 계획 수립				○	
	나.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		
3. 교섭단체 운영	1.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2. 의원 전체 세미나에 관한 사항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4. 민원행정	1. 민원 관련 업무계획 수립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2. 의정활동 지원 및 민원서비스 콘텐츠 개발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3. 민원현장보고서 발간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발간배부		○			
	4. 민원해소자문단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자문회의 개최		○			
	5. 의회 인턴십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5. 민원접수 및 관리	1. 의회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분석보고				○	
	2. 의회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		
8. 인사담당관						
1. 공무원 인사	1.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		
	2. 장기인력관리계획					
	가. 장기인력관리 기본계획 수립				○	
	나. 시행계획 수립			○		
	3.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					
	가. 채용계획 수립				○	
	나. 시험위탁 요구		○			
	다. 시험위원 선정			○		
	라. 임용등록계획 수립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마.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			
	바. 임용발령 사항			○		
	4. 공무원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					
	가. 승진계획 및 심사결과				○	
	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조정			○		
	다. 다면평가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		
	5. 전보 및 파견(복귀) 및 휴직에 관한 사항					
	가. 전보 및 파견(복귀)계획 수립				○	
	나. 인사발령 사항			○		
	6. 대우공무원					
	가. 선발계획 수립				○	
	나. 선발결과 보고			○		
	7. 명예·조기정년퇴직					
	가. 비위사실 조회		○			
	나. 명예·조기정년 퇴직자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통 보		○			
	8. 인사기록 및 전산 관리					
	가. 공무원증 및 전자카드 발급		○			
	나. 재직 및 경력증명서 발급	○				
	다. 신원조회 및 전력조회		○			
	라. 인사기록 작성·정정·이송		○			
	9. 근무성적 평정 관련					
	가. 평정지침 수립 및 제도개선 사항			○		
	나.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		
	10.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해임 등				○	
	나. 인사위원회 개최 계획			○		
	다.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		○			
	11. 의료·고용보험 등 관련 사항					
	가. 피보험자 자격관리	○				
	나.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다. 보험부담금 납부		○			
	12. 복무관리 관련 사항					
	가. 복무지침 수립			○		
	나. 휴가업무 지침 수립			○		
	다. 복무지도점검 계획 수립		○			
	라. 시간외 근무관리 사항		○			
	마. 기타 복무관리		○			
2. 반부패 · 청렴 대책	1. 의회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		
3. 의원 의무신고	1. 의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운영		○			
	2. 의원 주식백지신탁 제도 의무이행 운영		○			
	3. 의원 외부강의 신고				○	
4. 감사 관련	1. 사무처 관련 진정, 비위사항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5. 공무원 교육	1. 공무원 교육 관련 사항					
	가. 교육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		
	다. 교육훈련자 선정 및 교육명령		○			
6. 공무원 후생	1. 직원 후생에 관한 사항		○			
	2. 직원 동호인 모임 육성 지원		○			
7.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보호	1. 직장내 괴롭힘 예방					
	가. 직장내 괴롭힘 예방 계획 수립 및 실시			○		
	나.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			
	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접수 및 상담		○			
	2. 직장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사 및 조치				○	
8. 목표관리 추진	1. 목표관리제 지침 시달			○		
	2. 목표관리 자료 수집		○			
	3. 목표관리 결과 보고			○		
9. 전문위원						
1. 위원회 관련	1. 위원장 사임 및 직무대리 보고				○	
	2. 위원의 사임 보고				○	
	3. 간사의 선임 및 사임 보고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4. 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 승인				○	
	5. 소위원회 구성				○	
	6. 특별위원회 구성				○	
	7. 소관위원회 해외연수, 세미나간담회, 계획 (변경)방 침수립				○	
	8. 중요사항 또는 민원진정서 접수처리 결과보고				○	

[별표2]

사무처장 권한에 관한 사무

(개정 2024. 4.)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1. 공통사항					
1. 공 사	1. 중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2. 공사계약 및 준공감새(중지, 준공기간 연기 및 설계변경 포함)				
	가. 1건당 도급액 10억원 이상			○	
	나. 1건당 도급액 10억원 이하		○		
2. 용 역, 물품제조 구매 및 기 타	1. 주요사항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2. 용역 또는 물품제조				
	가. 5억원 이상			○	
	나. 5억원 이하		○		
	3. 물품매입 및 기타				
	가. 2억원 이상			○	
	나. 2억원 이하		○		
	4. 조달물품 구매		○		
3. 수수료 및 사용료	1. 제 수수료 지출				
	가. 1건당 300만원 이상			○	
	나. 1건당 300만원 미만		○		
4. 봉급, 여비 및 기타	1. 봉급, 여비 및 기타 의무적 경비의 집행품의		○		
	2.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운영		○		
5. 자료제출	1. 중요업무 자료 제출			○	
	2. 소관업무 통계 및 기타 경미한 자료 제출		○		
6. 민원 서류처리	1. 중요 진정서 및 건의서			○	
	2. 경미한 진정서 및 건의서		○		
	3.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		
	4. 신고로써 종결되는 사항		○		
7. 기타 일반	1. 부서 및 전문위원실간 업무협조			○	
	2. 소속 부서의 사무분장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3. 사무 인계인수				
	가. 4급간			○	
	나. 5급간		○		
	다. 직원간	○			
	4. 물품의 반납		○		
	5. 물품의 청구와 수리		○		
	6. 소속 금품 및 현금 출납 명령		○		
	7. 각종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발간 배부		○		
	8. 각종 통계 및 정례보고(중앙부처, 타기관)		○		
	9. 관계부처와의 업무 협조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2. 의정담당관					
1. 의원 신상관련	1. 의원 등록서류 접수		○		
	2. 의원 기록카드 관리	○			
	3. 의원 수첩 및 배치 제작 관리		○		
	4. 의원관련 증명서 발급	○			
2. 총무 및 청사관련	1. 청사 내외 경비사항		○		
	2. 의회 출입증 발급		○		
	3. 보안 관리				
	가. 보안업무 조정 통제		○		
	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		
	다. 보안진단부 및 보안점검부 관리	○			
	4. 청사관리(주차, 청소 등)		○		
	5. 회의실 대관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대관예약시스템 운영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3. 문서 관리	1. 문서통제 및 부서분류		○		
	2. 관인 및 직인 관리		○		
4. 예산 운영	1. 의회예산 지침 작성 및 전달			○	
	2. 사무처 소관 예산 확정			○	
	3. 예산 집행계획 작성		○		
	4. 예산 집행 조정				
	가. 주요사항			○	
	나. 기타 일반사항		○		
	5. 예산배정요구	○			
	6. 예산 합의				
	가. 일상경비 및 1천만원 미만 예산 집행 합의	○			
	나. 1천만원 이상 예산 집행 합의		○		
5. 물품 수급관리	1. 물품 수급관리 계획 수립		○		
	2. 재물 현황 조사		○		
	3. 물품 소요 조회	○			
	4. 물품 정수의 사정		○		
	5. 불용물품 결정		○		
	6. 물품 관리 전환		○		
	7.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정수책정 및 재고관리		○		
6. 지 출	1. 지출원인행위		○		
	2. 지출계산서 작성 보고	○			
	3. 자금신청	○			지출원
	4.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		
	5. 세입세출외 유가증권 출납	○			
	6. 임금 지급		○		
	7. 의원 수당지급		○		
	8. 세입세출결산 총괄		○		
7. 차량관리	1. 일일배차 명령 및 유류지급	○			
	2. 차량연료 구입		○		
	3. 차량등록 및 검사 수속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4. 차량불용 결정 및 교체			○	
	5. 차량정비 및 용품구매		○		
8.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1. 과·실 등의 사무실 배정			○	
	2. 시설점검 및 보수		○		
	3. 청사보수용 자재구매		○		
	4. 기계실, 전기실, 음향전화실 운영		○		
9. 의정정보화	1. 의정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의정정보화 지원 운영		○		
	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2.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대책 수립·관리		○		
3. 언론홍보실					
1. 보도지원 및 분석	1. 기자실 운영 사항		○		
	2. 보도자료 수합 및 제공		○		
	3. 보도사항 분석 및 평가		○		
4. 의사담당관					
1. 의사관리	1. 의사운영관련 책자 발간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작성 및 발간		○		
	2. 의사운영관련 통계자료 관리		○		
2. 의안 및 의원요구 자료 관리	1. 의안 및 청원문서의 보존관리		○		
	2. 이송조례안 공포통지서 접수관리		○		
	3. 의원요구자료 및 서면질문서의 보존관리		○		
	4. 의안 및 청원 등의 전산자료 및 통계자료 관리		○		
3. 전문도서관 운영	1.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및 위원 위촉·해촉		○		
	2.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수집				
	가. 도서 구입		○		
	나. 비도서 및 연속간행물·학회간행물 구입		○		
	다. 전자자료 구입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라. 기증자료 수집 및 관리		○		
	3. 자료 DB 구축 및 관리				
	가. 서지DB 및 원문DB 구축	○			
	나. 자료 분류, 자료등록 관리, 장비 처리	○			
	4. 도서관 자료 열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자료 대출 · 반납	○			
	나. 도서관 회원 관리	○			
	다. 자료 제적 및 폐기		○		
	라. 장서점검 및 자료 보존 관리	○			
	5. 도서관 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6. 타기관과의 상호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		
5. 법제담당관					
1. 입법정책지원	1. 정책연구관련 유관기관 협조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2. 정책연구 과제 발굴 및 안건제안			○	
	3. 연구관련 검토자료 수집 및 제공				
	가. 중요자료			○	
	나. 일반자료		○		
	4. 국내 입법기관 등 업무협조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2. 법제관련 간행물 발간	1. 의회관련 법규집 편찬 간행			○	
	2. 각종 법무관계 자료 편찬 간행		○		
6. 재정분석담당관					
1.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	1.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 재정분석에 관한 사항			○	
	2. 국내 · 외 의회 예산정책 운영에 관한 조사 · 연구		○		
	3. 예산 · 재정 정책연구 과제 발굴 및 안건제안		○		
	4. 연구관련 검토자료 수집 및 제공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2. 예산정책 관련 전문지 간행	1. 「지방재정 연구동향」 발간				
	가. 발간지 간행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2. 「예산과 정책」 발간				
	가. 전문지 간행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3. 의안의 비용추계	1. 의안의 비용추계				
	가.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		
	나. 비용추계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다. 의안의 비용추계 통계 작성		○		
7. 정책지원담당관					
1. 민원접수 및 관리	1. 의회신문고 관리자 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	
	2. 의회신문고 관리자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3. 민원접수		○		
	4. 처리부서이송		○		
	5. 민원처리 통지		○		
	6.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7. 의원 민원관리카드 작성		○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1】 의장 권한에 관한 사무

현행				개정안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진 결 권 자 담당자	의장 협조처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진 결 권 자 담당자	의장 협조처
2. 언론홍보실							
3. 의정담당관							
3.의원 신상관련 ＜신설＞	1. ∼ 2.생략			3.의원 신상관련 ＜삭제＞	1. ∼ 2. 현행과 같음 3. 의원 결직신고·공개		○
	＜신설＞				1. ∼ 2. 현행과 같음		
7.복무관련 1.시간외 근무관리 사항	1.시간외 근무관리 사항	○		7.사무전결 1. ∼ 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1. ∼ 2.생략				1. ∼ 2. 현행과 같음		
9.목표관리 추진	1. 목표관리제 지침 시달		○	9.목표관리 추진	1. ∼ 2. 현행과 같음		
	2. 목표관리 자료 수집	○			1. ∼ 2. 현행과 같음		
10.의정정보화 1. ∼ 2.생략	3. 목표관리 결과 보고	○		10.의정정보화 1. ∼ 2.생략	1. ∼ 2. 현행과 같음		
	1. ∼ 2.생략				1. ∼ 2. 현행과 같음		
8. 인사담당관							
1.공무원 인사 1. ∼ 11.생략	1. ∼ 11.생략			1.공무원 인사 1. ∼ 11.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복무관리 관련 사항				12. 복무관리 관련 사항		
가. 복무지침 수립	가. 복무지침 수립	○		가. 복무지침 수립	가. 복무지침 수립	○	○
	나. 휴가업무 지침 수립	○			나. 휴가업무 지침 수립		
다. 복무지도점검 계획 수립 ＜신설＞	다. 복무지도점검 계획 수립			다. 복무지도점검 계획 수립 ＜신설＞	다. 복무지도점검 계획 수립	○	○
	＜신설＞				라. 시간외 근무관리 사항	○	
라. 기타 복무관리	라. 기타 복무관리	○		라. 기타 복무관리	라. 기타 복무관리	○	○
2.민원대응 대책	1. 생략		○	2.민원대응 대책	1. 현행과 같음		
	2. 의원 정계 의결 요구				2. ＜삭제＞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협조체	단위업무	전 결 권 자		의장 협조체
		담당자	담당관			담당자	담당관	
3.의원 업무 신고	1.생략				3.의원 업무 신고			
	2. 의원 겸직신고-공개			○				
	3. 의원 주식배지신탁 제도 의무이행 운영		○				○	
	4. 의원 외부강의 신고			○				○
<신설>	<신설>				7.직장내 괴롭힘 예방 괴롭힘 예방 및 보호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신설>				8.목표관리 추진			
	<신설>						○	
	<신설>						○	
	<신설>						○	

【별표 2】 사무처장 권한에 관한 사무

현행				개정안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협조체 결재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협조체 결재
		담당자	담당관			담당자	담당관	최장		
2. 인문홍보실					3. 인문홍보실					
3. 의정담당관					2. 의정담당관					

[행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234호****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부실시공 발생 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회피 등 재시공 조치 지연으로 인한 추가사고 발생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공사장 종합관리책임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제4항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 아울러, 관계법령 및 상위 예규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18조 등의 조항 및 별표 1, 2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사 진행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1차적인 책임 및 재시공 의무를 부여토록 하는 근거 신설(안 제24조 제4항 신설)
- 나.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항 및 별표 개정(안 제18조, 제26조, 별표 1, 별표 2)
- 다.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 라. 기타 조항 정비(안 제2조, 제8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의6)

3. 의견제출

이 예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기술심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 02-2133-8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 (1) 팩스: 02-768-8892
- (2) 이메일: dinoip@seoul.go.kr

(3) 우편: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7층 기술심사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예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1차적인 책임과 재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팀장 박현우, 담당 김종수							
4. 근거법령명등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 등				관 련 규제수		1건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서울특별시와 계약하는 계약상대자(건설공사 업체 등)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6.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없음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통해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으나,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할 일체의 책임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원도급사인 계약상대자에게 1차적인 책임 및 재시공 조치 의무를 부여하여 부실시공 발생에 따른 시정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규제를 강화하는 사항임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해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가 발생한 경우 추가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즉각적인 재시공 조치가 필요함에도
- 과실여부 판단, 책임소재 규명, 원도급사의 책임 회피 및 영세한 하도급 업체 여건 등으로 인해 재시공 조치 지연 발생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건설공사 부실시공 발생 시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간 책임 떠넘기기 등 재시공 조치 지연에 따른 추가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필요
- 계약상대자가 입찰공고 시점부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 원도급사인 계약상대자의 현장관리 책임의식 고취 등 부실시공 근절 도모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1차적인 책임 및 재시공 의무를 부여하여 계약상대자의 현장 관리 책임의식 고취 등 부실시공 근절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통한 「부실공사 Zero 서울」 실현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부실시공 발생 시 원도급사인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 건설사업자가 설계도서·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 스스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한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및 재시공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으로 사회적 제약요소는 없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현재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기술수준 및 행정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현 가능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 없음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해당 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해당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본 규제에 의한 추가비용은 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해당 없음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해당 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해당 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계약상대자가 입찰공고를 통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1차적인 책임 및 채시공 의무에 대한 계약조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 건설사업자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본 규정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기업활동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음

○ 아울러, 신설 규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및 안전 확보 등 공익성이 크므로 공사계약 특수조건 내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공사목적물의 주요구조부에 결함이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으로 지적, 발생한 경우와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건설사업자에게 채시공 등 시정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으로 규제의 기준은 명확함

○ 절차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는 공고를 통해 공사계약 특수조건 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체결 시 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게 됨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제3항

-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2절

○ 존속기한의 타당성 : 존속기한 없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해당 없음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해당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 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해당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예규 제 호

이 예규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중요문서 심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안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발주기관)을” 을 “(발주기관)를”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3장 공사계약” 을 “제9장 계약” 으로, “2-다에서 명시한 “공사계약특수 조건” ” 을 “2-마에서 명시한 “계약 특수조건” ”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 중 “1-가” 를 각각 “1-가-1)” 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2-나” 를 “1-나-2)” 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마” 를 “1-나-5)” 로, “부적합하여” 를 “적합하지 않아”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4-가-1)” 을 “1-라-1)-가)” 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대하서” 를 “대해서” 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6-가” 를 “5-가, 나” 로 한다.

제14조 중 “1-나” 를 “1-가-2)” 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9에” 를 “11에” 로, “피해에 사전대비 또는 관리하여야” 를 “피해 예방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0절” 을 “제11절”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밀점검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를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9절 10” 을 “제5절 1-사” 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1절” 을 “제12절” 로 한다.

제20조의6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 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제12절” 을 “제10절” 로 한다.

제24조제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굴삭기” 를 각각 “굴착기” 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순위

우선 순위	구분	대상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 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의 장애인기업
3	여성소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여성기업이면서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4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소기업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5	그밖의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여성기업
6	중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중기업

[별표 2] 기본사항 10대 항목 세부기준

1. 작업원 안전모 착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준용

2. 고소작업자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고리 체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준용

3. 개구부 관리철저(난간 및 방망·덮개·폭목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준용

4. 버팀보, 작업통로 등 상단에 자재적치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준용

5. 가설통로 설치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안전시설 임의 철거 불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준용

6.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준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준용

7. 작업장 조도기준 준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준용

8. 용접 또는 절단 등 작업시 불꽃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준용

9. 전기설비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지실시, 전동 작업공구 보호덮개 설치, 및 이동식비계 스토퍼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준용

10. 밀폐작업장 작업규정 준수(작업허가제 실시 및 환기, 산소농도 측정, 출입자통제 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등)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1조(인원의 점검)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출입의 금지) 준용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 <u>(발주기관)</u> 을 말한다. 2. ~ 7. (생략)	제2조(정의) ----- -----. 1. ----- --(<u>발주기관</u>)를 --. 2. ~ 7. (현행과 같음)
제3조(계약문서)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u>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u>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절 <u>2-다에서 명시한 "공사계약특수조건"</u> 은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이 예규를 포함한다. ② (생략)	제3조(계약문서) ① ----- ----- ----- <u>제9장 계약</u> ----- ----- ----- <u>2-다에서 명시한 "계약 특수조건"</u> -----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일반조건 제5절 <u>1-가</u> 에서 명시한 공사용지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서에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 ② (생략) ③ 일반조건 제5절 <u>1-가</u> 에서 명시한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	제7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 ----- <u>1-가-1)</u>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u>1-가-1)</u> ----- -----

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공사용지확보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제공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④ (생 략)

제8조(공사자재) ① 일반조건 제5절 2-나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기 이전에 그 자재의 적합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자재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대체신청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일반조건 제5절 2-마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공사자재가 부적합하여 제거 또는 대체의 지시를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2조제6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공사자재) ① -----
--- 1-나-2)-----

-----.

② ----- 1-나-5)-----

----- 적합하지 않아 -----

다.

제9조(공사현장대리인) ① 일반조
건 제5절 4-가-1)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권
한 및 책임을 위임한 공사현장
대리인의 이력서와 위임장을 계
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10조(공사감독관) ①·② (생
략)

③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
부터 통지 등을 받은 사항 중 확
인 또는 결정 등을 요하는 사항
으로서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
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
터 7일 이내에 확인 또는 결정
사항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해야 한다.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 일반조
건 제5절 6-가에 따라 계약담당
자가 계약상대자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승인한 경우 휴일
및 야간작업을 위하여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감독이 필요

-.
-.

제9조(공사현장대리인) ① -----

----- 1-라-1)-가)-----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사감독관)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대해서-----

-----.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 -----

----- 5-가, 나-----

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액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일반조건 제7절 1-나에 부가하여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감소된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한다.

제17조(손해배상 의무) ① 일반조건 제9절 9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피해에 사전대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제18조(하자보수) ① 일반조건 제10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

-----.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가-2)-----

-----.

제17조(손해배상 의무) ① -----
----- 11에 -----

피해 예방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
---.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하자보수) ① ----- 제11절 -----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9조(발굴물의 처리) ① 일반조건 제9절 10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굴물의 처리기간 동안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작업효율 저하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0조(하도급) ① 일반조건 제11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상대자의

--.

② -----

-----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발굴물의 처리) ① -----
-- 제5절 1-사-----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하도급) ① ----- 제12절 -----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상 또는 자격상 부적격하거나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20조의6(대금 구분지급의무 등)

① ~ ⑤ (생략)

⑥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5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 ④ (생략)

⑤ 제1항의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자문을 하지 아니한 분쟁 또는 계약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쟁의 해결은 일반조건 제12절 3-나의 방법을 따른다.

⑥ (생략)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① ~ ③ (생략)

<신설>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6(대금 구분지급의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제1항부터 제5항까지 ----

-----.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제10
절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고의나

④ ~ ⑯ (생 략)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①·② (생 략) ③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건설기계 중 저공해조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굴삭기, 지게차: 제작차배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다. ⑤ ~ ⑰ (현행 제4항부터 제16항까지와 같음)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굴착기----- -----. ④ ----- ----- --. 1. (현행과 같음) 2. 굴착기-----
--	--

허용기준 Tier-1 이하 적용 건설기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인 건설기계, 이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수입차는 통관일자)된 건설기계, 75kW 이상 130kW 미만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와 75kW 미만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 ----- ----- ----- ----- ----- ----- ----- ----- -----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1]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순위		[별표 1]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순위	
우선순위	구분	대상	대상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	사회복지기업 장애인기업	사회복지기업 장애인기업	「사회복지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 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의 장애인 기업
3	여성소기업 소상공인	여성소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여성기업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4	그밖의여성기업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소기업
5	중기업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6	중기업	그밖의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여성기업
6	중기업	중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중기업

개 정 안	행
[별표 2] 기본사항 10대 항목 세부기준 1. 작업원 안전모 착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준용 2. 고소작업자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고리 체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준용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준용 3. 개구부 관리철저(난간 및 방망·덩개·책목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준용 4. 버팀보, 작업통로 등 상단에 자재적치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준용 5. 가설통로 설치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안전시설 임의 철거 불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수막의 방지)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준용 6.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준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준용 7. 작업장 조도기준 준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준용 8. 응집 또는 절단 등 작업시 불꽃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준용 9. 전기설비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지실시, 전동 작업공구 보호덮개 설치, 및 이동식비계 스톱퍼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준용 10. 밀폐작업장 작업규정 준수(작업허가제 실시 및 환기, 산소농도 측정, 출입지통제 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등)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1조(인원의 점검)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출입의 금지) 준용	[별표 2] 기본사항 10대 항목 세부기준 1. 작업원 안전모 착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준용 2. 고소작업자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고리 체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준용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준용 3. 개구부 관리철저(난간 및 방망·덩개·책목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준용 4. 버팀보, 작업통로 등 상단에 자재적치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준용 5. 가설통로 설치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안전시설 임의 철거 불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수막의 방지)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준용 6.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준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준용 7. 작업장 조도기준 준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준용 8. 응집 또는 절단 등 작업시 불꽃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준용 9. 전기설비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지실시, 전동 작업공구 보호덮개 설치, 및 이동식비계 스톱퍼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준용 10. 밀폐작업장 작업규정 준수(작업허가제 실시 및 환기, 산소농도 측정, 출입지통제 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등)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1조(인원의 점검)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출입의 금지) 준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285호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이 개정('23.12.)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춰 정비하고, 상위 규정인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적용함(안 제1조부터 제2조, 제4조 및 제7조)

나. 재난유형 및 사용부서 등을 현행화 함(안 제5조)

다. 긴급한 재난발생을 대비한 재난문자방송 별도 승인권자 지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난상황관리과(전화: 02-2133-0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특별시청 재난상황관리과

－ 이메일 : seoul123@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이 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중요문서 심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을 “서울특별시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및 「재난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 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 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긴급재난문자”를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자연재난(호우, 태풍 등)과 사회재난(화재, 붕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통합발령시스템”을 “재난문자방송시스템”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입력권한”을 “입력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통합발령시스템”을 “재난문자방송시스템”으로, “있도록 서울특별시에서 지정한”을 “있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송출기준”이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기준”이란 재난문자방송으로, “있도록”을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재난유형 별”을 “재난유형별”로, “방송문안”을 “재난문자방송문안”으로 한다.

1. “재난문자방송시스템”이란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정보의 송출을 요청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긴급재난문자”를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자연재난(호우, 태풍 등)과 사회재

난(화재, 붕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통합발령시스템”을 “재난문자방송시스템”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입력권한”을 “입력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통합발령시스템”을 “재난문자방송시스템”으로, “있도록 서울특별시에서 지정한”을 “있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송출기준”이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기준”이란 재난문자방송으”로, “있도록”을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재난유형 별”을 “재난유형별”로, “방송문안”을 “재난문자방송문안”으로 한다.

1. “재난문자방송시스템”이란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정보의 송출을 요청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긴급재난문자”를 “재난문자방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및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상호합의서”를 “사항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재난문자방송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재난문자방송 운영책임관과 재난문자방송 송출요청 및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책임자를 두며, 운영책임관은 재난안전관리실장, 운영책임자는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상황관리과장이 된다. 다만, 민방공경보 관련한 경우는 서울특별시청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 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용책임관”을 “운영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긴급재난문자”를 “재난문자방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용책임자”를 각각 “운영책임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긴급재난문자”를 “재난문자방송”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긴급재난문자 승인요청에 대한 승인발송”을 “재난문자방송 발송요청에 대한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긴급재난문자의 중복내용 송출차단”을 “재난문자방송의 중복내용 차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용책임자 부재에 대비하여, 별도의 승인권자를 지정”을 “운영책임자 부재 시에는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관리팀장이 운영책임자 임무를 수행”으로 한다.

4. 그 밖에 발송현황 관리 등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긴급재난문자의 사용부서”를 “재난문자방송의 사용부서”로, “해당 사용부서 및 기관에서 긴급재난문자의 송출”을 “송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가. 교육행정국: 재난으로 인한 구 단위 이상의 학교 휴업 조치

2. 소방재난본부(소방서): 재난현장 긴급·위급상황 발생하는 경우의 국지적 자연재난 및 사회 재난
3. 재난안전관리실
 - 가. 재난안전예방과: 폭염, 한파, 지진, 화산, 다중운집 행사 인파사고
 - 나. 도로시설과: 공동구 사고, 도로터널사고,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 다. 도로관리과: 지반침하, 풍수해(대설)
 - 라. 교량안전과: 한강교량 대형사고
4. 주택정책실
 - 가. 주거정비과: 아파트공사장 붕괴
 - 나. 지역건축안전센터: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5. 푸른도시여가국
 - 가. 자연생태과: 산불
 - 나. 동물보호과: 가축질병
 - 다. 산지방재과: 산사태·급경사지
6. 물순환안전국
 - 가. 수변감성도시과: 가뭄
 - 나. 치수안전과: 풍수해(태풍·호우), 댐붕괴
 - 다. 물재생시설과: 대규모 수질오염, 물재생센터 마비
7. 소방재난본부
 - 가. 재난대응과: 낙뢰,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대테러, 정전 승강기 사고
 - 나. 예방과: 위험물 사고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가. 공정경제담당관: 생활필수품 유통 마비
 - 나. 농수산유통담당관: 농수산물 유통마비
9. 디지털정책관
 - 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 사고
 - 나.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정보서비스 마비
10.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산업시설생산 마비
11. 도시교통실
 - 가. 도시철도과: 도시·고속철도 대형사고, 지하철파업
 - 나. 버스정책과: 버스 총파업
 - 다. 택시정책과: 택시 총파업
 - 라. 물류정책과: 육상화물운송 마비
12. 기후환경본부
 - 가. 대기정책과: 대규모 황사 발생, 초미세먼지
 - 나. 녹색에너지과: 전력, 원유수급, 도시가스 수급, 열공급 중단
 - 다.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
 - 라. 자원회수시설과: 소각시설 마비

- 마. 생활환경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 화학물질 유출사고
- 13.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 14. 시민건강국
 - 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 마비
 - 나. 감염병관리과: 감염병
 - 다. 공공의료추진단: 병원시설 대형사고
- 15. 행정국 총무과: 시청사 마비
- 16. 도시기반시설본부
 - 가. 토목부(시설부): 도로공사장 붕괴
 - 나. 도시철도토목부(도시철도국): 지하철공사장 붕괴
- 17. 서울아리수본부
 - 가. 생산부 생산관리과: 식·용수 사고
 - 나. 시설부 누수대응과: 대형 상수도 누수
 - 다. 시설부 시설건설과: 상수도공사장 붕괴
- 18. 미래한강본부 수상관리과: 한강수난사고
- 19.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중단, 사고
- 20.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지하철 중단, 사고
- 21. 남서울경전철(주): 지하철 중단, 사고

제5조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를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상황관리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통합발령시스템에”를 “재난문자방송시스템에”로, “시장에게 긴급재난 문자의 송출”을 “운영책임자에게 재난문자방송 발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발령시스템”을 “재난문자방송시스템”으로, “시 표준문안”을 “시 별표 1의 표준문안”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송출기준)”을 “(발송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긴급재난문자”를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기준을 마련한다”를 “발송기준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2조(발송기준)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역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을 “자연·사회 재난발생”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9조) 중 “시장은 긴급재난문자”를 “운영책임관은 재난문자방송”으로, “제도개선”을 “제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조사항”을 “필요한 경우에는 개

선사항”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중전의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

연번	재난유형	발송시기	표준문안	주무부서
1	학교휴업	발생시	오늘(○/○) ○○으로 인하여 서울지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임시휴업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2	지진	발생시	0000-00-00 00:00 ○○ 00km 지역/해역 지진 규모 M0.0 발생 /진동 멈춘 후 야외 대피/낙하물여진 주의. Earthquake [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위급·긴급 재난문자] ※(기상청→서울시민),발송 이후 필요시 추가 발송 (서울시→서울시민)
			0000-00-00 00:00 ○○ 00km 지역/해역 규모 ○.○ 지진발생/추가 지진 발생에 유의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기상청→서울시민),미발송 필요시 발송(서울시→서울시민)
3	화산	화산분화 발생전	○월○일 ○○산 화산분화, 추가 지진, 화산재 낙하 우려, 창문을 닫아 화산재 유입차단,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건강관리에 유의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화산재 발생전	○월○일 ○○산 화산분화, 화산재 낙하 우려, 창문을 닫아 화산재 유입차단, 실외활동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건강관리에 유의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4	한파	사전대비	어르신, 장애인 등 홀로 거주하는 경우 수시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빙판길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보폭을 줄이고 굽이 낮은 미끄럼 방지 신발을 준비합니다. [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급격한 기온 강하가 예상되므로 각 가정에서는 난방에 유의하시고, 결빙이 우려되니 출퇴근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및 운전시 감속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까지 한파와 대설로 인한 차량 정체 예상. 야외활동 자제·보온 유지 바라며, 계량기 동파·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지역에 한파와 대설 예상. 야외활동 자제·보온 유지 바라며, 계량기 동파·미끄럼 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동파 방지를 위하여 수도 계량기 등은 보온 조치를 하고, 보일러 배관 및 난방기구 등은 사전에 정비하여 질식사고 및 화재를 예방합니다. [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한파 지속 시 실내 기온이 4도 떨어지면 심혈관 사망 위험이 5% 높아집니다. 저온에서는 혈액 순환이 느려지고, 응고되어 뇌경색 발병이 높아집니다. [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연번	재난유형	발송시기	표준문안	주무부서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사전에 알아두고, 본인과 가족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합니다.[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대응방법	기온 강하로 도로결빙이 우려되므로 감속 운전하시고,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까지 한파가 지속 예상되므로 각 가정에서는 난방유지, 계량기 동파에 유의하시고 결빙에 대비 대중교통 이용 및 운전 시 감속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지난 밤 ○○지역에 내린 대설과 한파로 도로가 얼어 위험하니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시고, 수도계량기 동파 및 난방관리에 각별히 유의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 보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동상에 걸렸을 때는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찌어서는 안 되며, 따뜻한 물로 세척 후에 보온을 유지한 채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빙판길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폭을 줄이고,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걷지 않습니다. 응달진 곳을 피하고 손에 물건을 들지 않습니다.[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수도계량기, 수도관, 보일러 배관 등은 현 옷 등 보온재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과도한 전열기 사용을 자제하고, 인화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습니다. 야외 캠핑 시에는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 누전 전기사고에 주의합니다.[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저체온증 시 신속히 병원으로 가거나 119에 신고합니다. 젖은 옷은 벗고 담요나 침낭을 감싸며, 겨드랑이, 배 위에 핫팩이나 더운 물통을 둡니다.[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동상부위는 따뜻한 물(38~42도)에 담그고, 얼굴과 귀는 따뜻한 물수건을 대어줍니다. 손발은 소독된 마른 거즈를 끼우고 동상부위는 높게 합니다.[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연번	재난유형	발송시기	표 준 문 안	주무부서
			야외작업장에서는 추운시간대 작업 최소화, 따뜻한 옷 착용, 방수 장갑과 신발 착용, 따뜻한 물과 장소를 제공하는 등 안전관리에 유의[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한파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등 질병이 있거나 고령자 또는 신규 작업자는 한랭질환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옥외에서 작업 시 피부가 검붉어지고 물집이 생기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멈추고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5	폭염	경보 발효시	오늘 서울지역에 폭염이 심해오니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낮시간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섭취와 휴식, 주변 노약자분들께 안부전화 등 안전수칙 준수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6	다중운집 행사 인파사고	사전대비	오늘 0시 00구 00 다중운집 행사로 인해 많은 인파 밀집이 예상되오니 해당지역 및 인근 시민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예방과
		사고 발생시	오늘 0시 00구 00로 00 다중운집 행사장에서 인파밀집 사고 발생, 해당지역 시민은 즉시 혼잡지역에서 대피하시고 인근 시민 및 차량은 우회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7	공동구 사고	사고 발생시	오늘 0시 00구 00공동구에서 발생한 화재진압으로 인한 00지역 교통통제에 협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로시설과
8	도로터널 사고	사고 발생시	오늘 0시 00구 00터널 교통(화재)사고로 전면통제되고 있으니, 이용차량은 교통정보 확인 및 우회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로시설과
9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사고 발생시	오늘 00구 00지하도상가 화재(가스누출) 사고 발생으로 추가사고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로시설과
10	지반침하	사고 발생시	오늘 0시 00구 지반침하로 인하여 00대로 차량통행이 불가하오니, 교통정보 확인 및 우회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로관리과
11	풍수해 (대설)	사전대비	00부터 00까지 00, 00지역에 많은 눈 예상. 도로 결빙으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니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및 운전시 저속 운행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로관리과
		대응방법	00, 00지역에 많은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로관리과

연번	재난유형	발송시기	표 준 문 안	주무부서
			○○까지 대설 및 한파가 지속 예상되므로 각 가정에서는 난방유지, 계량기 동파에 유의하시고 결빙에 대비 대중교통 이용 및 운전 시 감속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로관리과
			지난 밤 ○○지역에 내린 대설과 한파로 도로가 얼어 위험하니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시고, 수도계량기 동파 및 난방관리에 각별히 유의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로관리과
			내 집 앞, 내 점포 앞 보행로에 내린 눈은 인근 제설함에 비치되어있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가족, 이웃의 사고를 예방합니다.[서울특별시청]	도로관리과
		복구안내	가족 및 지인의 안전 여부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확인하며,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이 의심 되는 경우 112에 신고합니다.[서울특별시청]	도로관리과
			대설로 인한 가스, 전기, 지역난방 고장 시, 가스안전공사(1544-4500), 전기안전공사(1588-7500), 지역난방공사(1688-2488)에 신고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로관리과
12	한강교량 대형사고	안전안내	오늘 ○시 ○○대교 붕괴(위험)으로 인하여 차량을 전면 통제하오니, 교통정보 확인 및 우회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교량안전과
13	아파트 공사장 붕괴	발생시	오늘 ○시 ○○구 ○○아파트 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추가붕괴, 화재 등의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주거정비과
14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사고	발생시	오늘 ○시 ○○구 ○○건축물 붕괴사고 발생, 인근 주민은 추가피해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하시고, 차량 우회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지역건축안전센터
15	산불	발생시	○○:○○경 ○○동 ○○산 산불 발생. 입산 자제 및 인근 주민, 등산객은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 바랍니다.Forest fire, Evacuation[서울특별시청]	자연생태과
		대피권고	○○시 ○○분 ○○동 ○○산 산불 확산이 우려되니, 인근 주민, 등산객은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 바랍니다.Evacuation[서울특별시청]	자연생태과
		대피명령	○○구 ○○산 산불 확산 중. 인근 주민, 등산객은 산에서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Forest fire, Evacuation[서울특별시청]	자연생태과

연번	재난유형	발송시기	표 준 문 안	주무부서	
		발생위험	○○구 지역에 대형산불 위험 경보 발령. 산불발생 및 확산 위험이 높으니 주민과 등산객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Forest fire[서울특별시청]	자연생태과	
16	가축질병	전염병 발생시	오늘 ○시 ○구에서 조류독감(구제역) 발생.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동물보호과	
		인체감염 예방	오늘 ○시 ○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조류나 동물의 사체 또는 분변을 만지지 마시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동물보호과	
17	산사태·급경사지	발생전	사전 대비	바람없이 나무가 흔들릴때, 계곡에 흙탕물이 내려올때 등 산사태 전조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위험 시 지정된 대피소나 산과 떨어진 높은 곳으로 대피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산지방재과
			주의보	오늘 ○○시 ○○구 ○○지역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오니 산림주변 야외활동 자제와 입산금지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산지방재과
			경보	오늘 ○○시 ○○구 ○○지역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으니 산림주변 접근금지, 산림인근 주민과 방문객은 산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산지방재과
			대피 안내	오늘 ○○시 ○○구 ○○지역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으니 산림 및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주민과 방문객은 대피장소(○○)로 즉시 대피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산지방재과
		위기경보 (주의단계)	오늘 ○○시 ○○구에 비가 내려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므로 산림 주변 야외활동 자제하시고 산에 있을 경우 산림 밖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산지방재과	
		위기경보 (경계단계)	오늘 ○○시 ○○구에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위험이 높으니 입산금지 및 산림주변 위험지역 접근금지, 산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신속 대피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산지방재과	
		위기경보 (심각단계)	오늘 ○○구에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으니 입산금지 및 산림주변 위험지역 접근금지, 산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산지방재과	
18	가뭄	가뭄발령	오늘 ○시 서울 가뭄 주의단계 발령. 물 사용을 자제하시고, 텃밭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수변감성도시과	

연번	재난유형	발송시기	표 준 문 안	주무부서
19	태풍	태풍 (사전 대비)	태풍 ○○ 북상중, ○○시 서울 영향권으로 강풍 대비 외출을 자제, 날리는 물건이 있거나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마세요.[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태풍 ○○ 북상중, ○○일 아침 서울 영향권으로, 창문 사이 틈새 없도록 보강, 흔들리지 않게 고정, 유리 파손에 대비해 실내화를 준비합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태풍 ○○ 북상중, ○○일 서울 영향권으로 간판, 창문 등은 고정하고, 화분 등은 실내로 이동조치, 침수대비 집 주변 배수로 사전점검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태풍이 북상중입니다. ○○일 오후 서울 영향권으로 주변 축대, 배수로, 지붕 을 점검하고 바람에 날아가는 간판, 화분 등은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태풍이 북상중입니다. ○○일 오후 서울 영향권으로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안전한 장소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 화분 등은 고정해주세요[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태풍내습	태풍 ○○이 서울 지역을 지나고 있으니 가급적 외출 자제 바랍니다. 하천변, ○○교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 낙하물 피해에 유의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 지역에 시간당 ○○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산사태, 붕괴, 침수 우려시 인근 대피소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강풍으로 끊어진 전기줄은 매우 위험하오니 접근하거나 만지지 마시고,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태풍 ○○이 서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단단히 고정, 가스는 미리 차단,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ms 강풍과 시간당 ○○mm의 비가 예상되니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창문을 고정하고 날리기 쉬운 물건은 안전조치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태풍 ○○ 북상으로 강풍과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침수 발생 시 인근 관공서, 지정된 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연번	재난유형	발송시기	표 준 문 안	주무부서
		태풍 상륙이후	집중호우 시 수압에 의해 맨홀 뚜껑이 갑작스럽게 솟아올 수 있으니 접근하지 마시고, 맨홀 구멍과 배수구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침수 도로나 교량은 건너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수 주택은 가스,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전문가 점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호우	특보 사전대처	○일 ○○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거주 지역의 정보(호우 피해가 발생한 적 있는지, 산사태나 침수위험 요인)를 미리 확인하고 대비합니다. [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일 ○○mm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공동주택관리자는 차수판, 모래주머니 및 양수기 등을 비치하여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특보 예보시	집중호우 시 위험지역은 ○○(대피소 기입)으로 대피해주세요. 하천 주변이나 저지대 주차된 차량은 이동 주차, 주변 배수구는 미리 점검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특보시	공동주택관리자는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신속히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설치, 지하공간에 물이 유입되면 즉시 대피 안내 및 전입금지 시킵니다. [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는 미리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하천이 범람하거나 대피 방송 시 하천 밖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물이 무릎까치 칠 경우 이동 금지, 119에 신고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호우 이후	주변의 피해를 확인하고, 가까운 행정기관에 피해를 신고합니다. 위험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으며,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지하공간이용 자	지하주택,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등 지하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시 즉시 전기를 차단하고, 가스를 잠근 후 지상으로 대피하세요. [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지하공간에 물이 무릎 이상으로 차올라 혼자서 문을 열 수 없을 때는 신속히 전기 전원 차단 후 도움을 요청해 함께 문을 열고 지상으로 대피해주세요. [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연번	재난유형	발생시기	표 준 문 안	주무부서
		지하 주차장	지하주차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경사로의 수압으로 차량 이동이 어려워지 즉시 몸만 지상으로 대피하세요. 차량 확인을 위한 진입도 금지해주세요.[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지하계단	지하계단으로 경강이 높이 정도로만 빗물이 유입되어도 성인이 올라가기 어려워지 지하에 물이 들어오면 즉시 지상으로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해주세요[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지하공간에서 대피할 때는 구두, 하이힐, 슬리퍼보다 운동화가 대피에 용이하며, 마땅한 신발이 없을 경우 맨발로 난간을 잡고 대피합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집 건물 침수시	빗물이 차오르면 전기 차단후 〇〇〇(이재민 대피소 기입)으로 대피하세요. 문이 열리지 않으면 119에 신고후 주변사람들에 도움을 청해 함께 문을 열고 대피하세요[서울특별시청] 침수 시 가스, 전기 차단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침수된 집에 돌아왔을때는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가전제품은 서비스센터의 점검을 받습니다.[서울특별시청] 침수되었던 집에 돌아왔을때는 붕괴 사고에 주의합니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것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안전 점검 후 사용합니다.[서울특별시청] 〇〇(동, 일원, 아파트)지역에 침수 발생, 해당 지역 주민은 신속히 인근 대로나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〇〇지역의 차량과 사람의 진입을 통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침수예보	〇〇구에 시간당 〇〇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침수에 대비해 수방자재 설치, 침수 시 침수되지 않는 고지대나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세요.[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침수경보	〇〇동(구)지역에 침수 발생, 침수경보를 발령합니다. 해당 지역 저지대 침수우려 지역의 주민은 즉시 〇〇초등학교, 〇〇복지회관(이재민 대피소 기입)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대피명령	〇〇(동, 일원, 아파트)지역에 침수/〇〇천 범람으로 대피 명령을 발령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께서는 현시간 이후 〇〇초등학교, 〇〇복지회관(이재민 대피소 기입)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도로침수 안전조치	급류가 발생해 교량이 잠겨 있는 경우, 절대 진입하면 안 됩니다. 하천 급류 발생 시, 앞은 수심에서도 차량이 쉽게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연번	재난유형	발송시기	표준문안	주무부서
			도로의 맨홀이 이탈하거나 솟아오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 맨홀을 피해야 합니다. 침수 정도를 확인하기 힘든 밤에는 운전을 자제합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물이 고인 곳으로 진입했다면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해 에어컨을 끄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속 30km이하로 주행합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차량침수 안전조치	차량이 침수됐다면 내·외부 수압 차이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비해 창문이나 선루프를 미리 열어둡니다. [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차량이 침수되어 내·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운전석 목받침을 분리하여 목받침 하단 철제봉으로 유리창 모서리를 깨고 대피합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정전시	오늘 00시 00분 일대에 정전 발생, 복구 중이니 전자기기 전원을 끄고 손전등 사용,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하천통제	오늘 00시 호우로 인하여 00천 범람이 우려되어 하천변 출입을 전면 통제하오니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도로통제	금일 호우로 00시 00분부로 00지하차도(00~00방향) 통제 중으로 인근 차량은 우회 운행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집중 호우로 00지하차도(00~00방향)가 00:00부터 통제되었으니 우회하여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오늘 00시부터 00분 수위 상승으로 00도로(00차도~00JC) 전구간이 교통 통제됨을 알려드리오니 인근 차량은 우회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오늘 00시00분 00로(00상류~00대교 양방향), 00교(양방향)가 교통 통제중이오니 차량 우회 및 안전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금일 호우로 00시 00분부터 00역에서 00아파트 일대(00대로) 통제 중으로 인근 차량은 우회 운행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20	댐붕괴	발생전	오늘 00시 00분 손상으로 붕괴 위험이 있으니 인근 주민과 여행객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고 재난 방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치수안전과

연번	재난유형	발생시기	표 준 문 안	주무부서
21	대규모 수질오염	발생시	오늘 00구 00하천에 (기름, 화학물질) 오염 사고 발생. 00하천 방제조치 중으로 인근 지역 주민은 하천 이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물재생시설과
22	물재생센터 마비	발생시	오늘 0시 00물재생센터 마비로 인해 00방류부 지점에 하수가 유입되니 수상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물재생시설과
23	낙뢰	발생시	오늘 00시 00구 00지역 낙뢰 발생, 지역 주민은 안전에 유의하시고,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재난대응과
24	다중시설 대형화재	발생시	오늘 00구 00동 00시장 내 00점포 화재 발생. 주변 도로에 있는 차량은 이 지역을 우회하여 주시고 인근 주민은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재난대응과
		대피명령	오늘 00구 00동 00건물 화재 발생.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인근 주민은 00지역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재난대응과
25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발생시	오늘 0시 00구 00인근 사업장 인명사고 발생, 지역주민은 안전에 유의하시고, 주변 도로 이용차량은 우회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재난대응과
26	대테러	총기·폭발물	오늘 00시 00지역 총기난사(폭발물 테러 의심) 사건 발생. 00지역 접근 금지, 가까운 건물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경찰 및 방송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재난대응과
		기타 수단	오늘 00시 00지역 0000 상황 발생. 00 지역 접근 금지, 가까운 건물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경찰 및 방송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재난대응과
		생물테러	오늘 00지역 생물 테러로 의심되는 00감염병 환자 발생. 외출을 자제하고 텔레비전 등에서 대응 요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재난대응과
27	정전 승강기 사고	발생시	오늘 00시 00지역에 승강기 정전사고가 발생하여 복구작업 진행 중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십시오.[서울특별시청]	재난대응과
28	위험물 사고	발생시	00구 00로 000업체 위험물 사고 발생. 사고 장소 내 근무자 즉시 대피, 인근 주민 외출자제, 재난방송을 청취 요망. 통행자는 우회하십시오. [서울특별시청]	예방과
29	생활필수품 유통 마비	발생시	오늘 0시 00지역 생활필수품 유통이 마비되었으니 해당지역 주민들은 인근 지역 유통망을 이용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공정경제담당관

연번	재난유형	발생시기	표준문안	주무부서
30	농수산물 유통 마비	발생시	오늘 〇〇시 서울지역 농수산물 유통이 마비되었으니 시민들께서는 시외 지역 유통망을 이용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농수산물유통담당관
31	정보통신 사고	통신두절시	오늘 〇〇시 〇〇사의 통신 두절 사태 발생. 〇〇사 이용 고객은 통신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용 고객들은 통화 시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
32	정보서비스 마비	발생시	오늘 〇〇사의 〇〇장애로 〇〇구 일대 무선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용 고객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33	산업시설 생산 마비	발생시	오늘 〇시 〇〇산업단지 노사분규 발생, 〇〇공급이 불가하오니 다른 곳을 이용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전략산업기반과
34	도시철도 대형사고	사고 발생시	〇〇:〇〇경 〇호선 〇〇~〇〇역 간 연기 발생으로 〇〇역~〇〇역 간 열차운행이 중지되었으니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
		차량 우회 협조	오늘 지하철 〇호선 〇〇역에서 발생한 사고를 수습하느라 〇〇역 인근 도로가 혼잡할 수 있으니 주변 도로 이용 차량은 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
		복구 완료시	오늘 지하철 〇호선 〇〇역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의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〇〇시부터 열차 운영을 재개합니다.[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
35	고속철도 대형사고	사고 발생시	오늘 〇〇구 〇〇역 인근에서 열차 충돌 사고 발생. 〇〇선 철도가 운행 중단될 수 있으니 고속철도를 이용하실 분은 운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
		차량 우회 협조	오늘 〇〇구 〇〇역 인근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 수습으로 인근 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주변 도로 이용 차량은 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
		복구 완료시	오늘 〇〇구 〇〇역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〇〇시부터 열차 운영을 재개합니다.[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
36	지하철 파업	파업시	오늘 〇시 〇호선 지하철 파업으로 〇호선 지연운행, 역별시간 확인 후 이용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
37	버스 총파업	파업시	오늘 〇시 버스파업으로 〇〇지역이 버스운행이 중단되었으니,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버스정책과

연번	재난유형	발생시기	표 준 문 안	주무부서
38	택시 총파업	파업시	오늘 ○시 택시파업으로 심야시간대 택시공급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택시정책과
39	육상화물운송마비	발생시	오늘 ○시 화물자동차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발생에 따라 화물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됨을 알려드립니다.[서울특별시청]	물류정책과
40	대규모 황사	황사경보	오늘 황사가 심하오니,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황사 실내 유입 차단, 노약자 실외활동 자제,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대기정책과
41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 경보> 오늘 00:00 미세먼지 경보. 어린이, 노약자 실외활동 금지, 대중교통 이용하기,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등 건강관리에 유의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대기정책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내일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행(차량 운행제한). 대중교통 이용 동참, 필요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건강관리에 유의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대기정책과
42	전력	대규모 정전 발생	오늘 ○○지역에 정전이 발생되어 복구 중이니, 전기기기의 모든 전원을 끄고 손전등을 사용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녹색에너지과
43	원유수급분야	수급불안	오늘 ○○시 원유 수급 심각 단계 발령. 사태기를 비롯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자제하고, 원유 수급 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녹색에너지과
44	도시가스 수급	가스폭발	오늘 ○○구 ○○공급관리소 가스 폭발 사고 발생. ○○지역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인근 지역 접근 자제, 차량 우회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녹색에너지과
45	열공급 중단	중단시	오늘 00:00경 ○○지역 인근 열수송관 누수로 긴급보수공사를 위해 열공급(급탕,난방)이 일시 중단됩니다. 00경 복구에정입니다.[서울특별시청]	녹색에너지과
46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	반입중단	수도권매립지 00사고로 인해 쓰레기반입 중단, 쓰레기 배출 시 해당구청 청소대책에 협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자원순환과
47	소각시설 마비	반입중단	○○자원회수시설 긴급보수로 쓰레기반입 중단, 쓰레기 배출 시 구청 청소대책에 협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자원회수시설과

연번	재난유형	발생시기	표 준 문 안	주무부서
4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	운영중단	생활폐기물대형업체 파업으로 쓰레기 처리가 불가하오니, 쓰레기 배출 시 구청 안내에 협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생활환경과
49	화학물질 유출사고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 실내대피 주민알림(사고발생지역 대상 주민) 〉 오늘 00구 00동 00(사업장)에서 00물질 누출 발생. 00 지역에서는 창문을 닫고 에어컨 중지 후 다음안내까지 실내 대기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생활환경과
			〈상황종료 알림〉 오늘 00시경 00동 00(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대응 완료되어 실내대피 종료. 일상 생활 복귀바랍니다.	생활환경과
50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오늘 0시 00구 000공연장 사고 발생. 공연장 내 근무자 즉시 대피, 인근 주민 안전유의, 차량 이용 시민들은 우회하십시오.[서울특별시청]	문화정책과
51	보건의료 마비	보건의료 마비	오늘 0시 00구 000병원 파업으로 진료차질이 예상되오니 다른 병원을 이용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보건의료정책과
52	감염병	예방안내	00.00.(요일) 0시 00지역 000유행, 손씻기 및 마스크 착용, 3밀(밀폐, 밀접, 밀집) 시설 및 장소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감염병관리과
53	병원시설 대형사고	발생시	오늘 0시 00구 000병원 00사고로 인하여 병원이용이 불가하오니 다른 병원을 이용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공공의료추진단
54	시청사 마비	사고 발생시	오늘 0시 서울시청 점거농성으로 인해 청사이용이 불가하오니 청사방문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총무과
55	도로공사장 붕괴	붕괴시	오늘 0시 00구 00도로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00일대 주변이 혼잡하오니 차량 이용 시 우회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56	지하철공사장 붕괴	대형사고	오늘 00구 00공구 0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 발생. 이 지역을 지나는 차량은 우회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57	식·용수 사고	식용수	〈수질 악화 시〉 오늘 00구 00정수장 수질 사고 발생. 00시부터 00지역 단수 예정이니 식수 확보 등 단수에 대비 바랍니다.(0시쯤에 비상 급수 공급 예정)[서울특별시청]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운영 중단 시〉 오늘 00구 000정수장 일시 가동 중단으로 0시부터 00지역 단수 예정이니 식수 확보[서울특별시청]보 등 단수에 대비 바랍니다.(0시쯤에 비상 급수 공급 예정)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연번	재난유형	발생시기	표 준 문 안	주무부서
58	대형상수도 누수	대형상수도 누수	오늘 ○시 ○○지역 누수발생으로 급수중단 및 급수차량에 의한 비상급수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청]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누수대응과
59	상수도 공사장 붕괴	발생시	오늘 ○시 ○○지역 상수도공사 중 관로 파손으로 ○○가 침수되어 지하철 이용이 불가 하오니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시설건설과
60	한강 수난사고	발생시	오늘 ○시 ○○대교 아래 한강 수난사고 구조작업 중이오니 시민들께서는 한강 이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청]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 수상관리과
61	도시철도, 지하철 사고	사고 발생시	오늘 ○시경 ○선 전원공급장치 이상으로 모든 열차 운행중단 발생, 열차 지연이 예상되 오니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62	도시철도, 지하철 사고	사고 발생시	오늘 ○시경 ○선 ○역 선로고장으로 양방향 운행중단 발생, 열차 지연이 예상되오니 운 행 상황을 확인후 열차 이용 바랍니다[서울시메트로9호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63	도시철도, 지하철 사고	사고 발생시	오늘 ○시경 ○선 관제시스템 제어불능으로 신림선 운행중단 발생, 열차 지연이 예상되 오니 운행 상황을 확인후 열차 이용 바랍니다[남서울경전철]	남서울경전철(주)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u>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제3항 및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된 재난정보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송출을 요청하는 긴급재난문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발령시스템"이란 제5조의 사용부서 및 기관에서 재난정보를 입력하고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송출을 요청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구축·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u>서울특별시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u>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및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 뜻은 ----- -----. 1. "재난문자방송시스템"이란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정보의 송출을 요청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 | |
|---|--|
| 2. "재난정보"란 <u>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긴급재난문자의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로 행동요령이 포함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정보를 말한다.</u> | 2. ----- <u>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 방송</u> -----
----- <u>자연재난(호우, 태풍 등)과 사회재난(화재, 붕괴 등)</u> -----. |
| 3. "사용부서 및 기관"이란 <u>통합발령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난정보를 송출할 수 있도록 입력권한이 부여된 제5조의 사용부서 및 기관을 말한다.</u> | 3. ----- <u>재난 문자방송시스템</u> -----
----- <u>입력할 수 있는 권한</u> -----. |
| 4. "재난정보 입력자"란 <u>통합발령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에서 지정한 사용부서 및 기관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u> | 4. ----- <u>재난 문자방송시스템</u> -----
----- <u>있도록</u> -----. |
| 5. " <u>송출기준</u> "이란 <u>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긴급재난문자로 송출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기준을 말한다.</u> | 5. " <u>발송기준</u> "이란 <u>재난문자방송</u> -----
----- <u>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u> -----. |
| 6. "표준문안"이란 <u>재난유형 별 행동요령이 포함된 방송문안을 말한다.</u> | 6. ----- <u>재난유형별 재난문자 방송문안</u> -----. |
|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 제3조(적용대상) ① ----- |

다)이 시행하는 긴급재난문자에 대하여 제5조의 사용부서 및 기관에 적용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및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상호합의서에 따른다.

제4조(운용책임관 및 운용책임자)

① 시장은 긴급재난문자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긴급재난문자 운용책임관과 긴급재난문자 송출요청 및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용책임자를 지정하며, 운용책임관은 안전총괄본부장, 운용책임자는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장이 된다.

② 운용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재난문자 송출기준 설정
2. (생략)
3. 운용책임자의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③ 운용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 재난문자방송-----

-----,

② ----- 사항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

-----.

제4조(운영책임관 및 운영책임자)

① 시장은 재난문자방송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재난문자방송 운영책임관과 재난문자방송 송출요청 및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책임자를 두며, 운영책임관은 재난안전관리실장, 운영책임자는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상황관리과장이 된다. 다만, 민방공경보 관련한 경우는 서울특별시청민방위경보 통제소장이 된다.

② 운영책임관-----
-----,

1. 재난문자방송 -----
2. (현행과 같음)
3. 운영책임자-----

③ 운영책임자-----

각 호와 같다.

1.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긴급재난문자 송출요청
 2. 사용부서 및 기관의 긴급재난문자 승인요청에 대한 승인 발송
 3. 긴급재난문자의 중복내용 송출차단 및 제한
 4. 긴급재난문자 운용, 교육 전담인력 확보
 5. 재난정보입력자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 ④ 야간, 휴일 등 운용책임자 부재에 대비하여, 별도의 승인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부서 및 기관의 권한과 책임) ① 긴급재난문자의 사용 부서 및 기관과 해당 사용부서 및 기관에서 긴급재난문자의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교육청
가. 정책·안전기획관 : 각종

-----.

1. ----- 재난문자 방송 -----
2. ----- 재난문자 방송 발송요청에 대한 승인
3. 재난문자방송의 중복내용 차단 -----
4. 그 밖에 발송현황 관리 등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삭 제>

<삭 제>

- ④ ----- 운영책임자 부재 시에는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관리팀장이 운영책임자 임무를 수행-----.

제5조(사용부서 및 기관의 권한과 책임) ① 재난문자방송의 사용 부서 ----- 송출-----

-----.

1. 서울특별시교육청
가. 교육행정국: 재난으로 인

재난으로 인한 학교 휴업 조치

2. 자치구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담당 부서 : 국지적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신 설>

3. 소방서 현장지휘대 : 재난현장 긴급·위급상황 발생하는 경우의 국지적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4. 안전총괄본부

가. 상황대응과 : 폭염, 한파, 지진, 화산

나. 도로관리과 : 도로합몰, 설해

다. 도로시설과 : 도로터널사고, 공동구사고, 교량(자동

한 구 단위 이상의 학교 휴업 조치

<삭 제>

3. 재난안전관리실

가. 재난안전예방과: 폭염, 한파, 지진, 화산, 다중운집 행사 인파사고

나. 도로시설과: 공동구 사고, 도로터널사고,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다. 도로관리과: 지반침하, 풍수해(대설)

라. 교량안전과: 한강교량 대형사고

2. 소방재난본부(소방서): 재난현장 긴급·위급상황 발생하는 경우의 국지적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4. 주택정책실

가. 주거정비과: 아파트공사장 붕괴

나. 지역건축안전센터: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삭 제>

차전용) 재난사고

라. 보도환경개선과 : 지하도

상가 안전사고

마. 교량안전과 : 교량 재난사
고

<신 설>

5. 물순환안전국

가. 물순환정책과 : 가뭄, 환
경(수질)오염

나. 하천관리과 : 댐 붕괴, 풍
수해

다. 물재생시설과 : 물재생센
터 마비

6. 소방재난본부

가. 서울종합방재센터 : 낙뢰,
테러, 대형화재, 구조구급분
야, 위험물질 유출,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신 설>

<신 설>

<삭 제>

<삭 제>

5. 푸른도시여가국

가. 자연생태과: 산불

나. 동물보호과: 가축질병

다. 산지방재과: 산사태·급경
사지

6. 물순환안전국

가. 수변감성도시과: 가뭄

나. 치수안전과: 풍수해(태풍·
호우), 댐붕괴

다. 물재생시설과: 대규모 수
질오염, 물재생센터 마비

7. 소방재난본부

가. 재난대응과: 낙뢰, 다중밀
집시설 대형화재, 사업장 대
규모 인적사고, 대테러, 정
전 승강기 사고

나. 예방과: 위험물 사고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가. 공정경제담당관: 생활필
수품 유통 마비

나. 농수산유통담당관: 농수

<신 설>

7. 도시교통본부

- 가. 교통정책과 : 지하철대형
사고, 지하철파업 등 시민불
편을 야기하는 제반 사고
- 나. 버스정책과 : 버스파업
- 다. 택시물류과 : 육상화물운
송 마비, 택시파업

8. 기후환경본부

- 가. 녹색에너지과 : 가스, 전
력 마비, 원유수급 마비
- 나. 대기정책과 : 미세먼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 다. 자원순환과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 소각시설 마
비
- 라. 생활환경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

<신 설>

산물 유통마비

9. 디지털정책관

- 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
보통신 사고
- 나.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정보서비스 마비

<삭 제>

12. 기후환경본부

- 가. 대기정책과: 대규모 황사
발생, 초미세먼지
- 나. 녹색에너지과: 전력, 원유
수급, 도시가스 수급, 열공
급 중단
- 다.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
- 라. 자원회수시설과: 소각시
설 마비
- 마. 생활환경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 화학물질

9. 시민건강국

- 가. 보건의료정책과 : 병원시설 대형사고, 보건의료 마비
 나. 식품정책과 : 식품안전
 다. 동물보호과 : 가축질병

라. 생활보건과 : 감염병

10. 주택건축국

- 가. 건축기획과 : 대형건축물 붕괴
 나. 공동주택과 : 재건축(공동) 아파트공사장 붕괴

11. 도시재생본부

- 가. 재생협력과 : 재개발 아파트공사장 붕괴
 나. 주거사업과 : 재건축(단독) 및 뉴타운 아파트공사장 붕괴

<신 설>

<신 설>

12. 푸른도시국

- 가. 자연생태과 : 산불
 나. 산지방재과 : 산사태·급경사지 붕괴

13. 경제진흥본부유출사고14. 시민건강국

- 가. 보건의료정책과 : 보건의료 마비
 나. 감염병관리과 : 감염병
 다. 공공의료추진단 : 병원시설 대형사고

<삭 제>

10.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 산업시설생산 마비11. 도시교통실

- 가. 도시철도과 : 도시·고속철도 대형사고, 지하철파업
 나. 버스정책과 : 버스 총파업
 다. 택시정책과 : 택시 총파업
 라. 물류정책과 : 육상화물운송 마비

<삭 제>

<삭 제>

가. 도시농업과 : 농수산물 유통 마비

나. 신성장산업과 : 산업시설 생산 마비

다. 공정경제과 : 생활필수품 유통 마비

14. 문화본부

가. 문화정책과 :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15. 정보기획관

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정보통신 마비

16. 행정국

가. 총무과 : 시청사 마비

<신 설>

17. 도시기반시설본부

가. 토목부 광역도로과 : 도로 공사장 붕괴

나. 도시철도토목부 토목2과 : 지하철공사장 붕괴

13.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삭 제>

<삭 제>

15. 행정국 총무과: 시청사 마비

<삭 제>

17. 서울아리수본부

가. 생산부 생산관리과: 식·용수 사고

나. 시설부 누수대응과: 대형 상수도 누수

다. 시설부 시설건설과: 상수도공사장 붕괴

16. 도시기반시설본부

가. 토목부(시설부): 도로공사장 붕괴

나. 도시철도토목부(도시철도국): 지하철공사장 붕괴

18. 상수도사업본부

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

상수도 누수

나. 시설안전부 시설과 : 상수

도공사장 붕괴

다. 생산부 생산관리과 : 식용

수공급사고

라.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

상수도 동파

19. 한강사업본부

가. 운영부 수상안전과 : 한강

수난사고

<신 설>

<신 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긴급재난문자 사용부서 및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예측 곤란한 경우 또는 대형 복합재난의 경우에는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에서 우선 실행 후 관련부서에 추후 통보한다.

⑤ 사용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긴급재난문자 사용부서

18. 미래한강본부 수상관리과:

한강수난사고

19.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중단, 사고

20.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지하철 중단, 사고

21. 남서울경전철(주): 지하철 중단, 사고

<삭 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상황관리과-----.

<삭 제>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전총
괄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제6조(재난정보 입력자의 임무)

① 재난정보 입력자는 재난으
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
우 신속히 통합발령시스템에 접
속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하고 시
장에게 긴급재난문자의 송출 승
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긴급
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이 문자
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통합발령시스템 장애
시 유선 등 기타 수단으로 행정
안전부에 송출을 요청할 수 있
다.

② 재난정보 입력자는 통합발령
시스템에 재난정보 입력 시 표
준문안을 활용하되, 재난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다.

제7조(송출요청 승인 권한) 행정
안전부와 사전 협의된 재난정보
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송
출요청하는 긴급재난문자를 승
인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이 가

④·⑤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6조(재난정보 입력자의 임무)

① -----

-----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에 ----- 운
영책임자에게 재난문자방송 발
송 -----, <단서 삭
제>

② ----- 재난문자방
송시스템----- 시 별표
1의 표준문안-----
-----,
<삭 제>

<u>진다.</u> <u>제8조(송출기준) 시장은 긴급재난 문자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u>송출 기준을 마련한다.</u></u> <u>1. 지역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u> <u>2. (생 략)</u>	<u>제7조(발송기준) 재난문자방송--</u> ----- ----- <u>발송</u> <u>기준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2조(발송기준)를 따른다.</u> <u>1. 자연·사회 재난발생-----</u> ----- <u>2. (현행과 같음)</u>
<u>제9조(업무협조) 시장은 긴급재난 문자의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기술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조사항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중앙 재난안전상황실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u>	<u>제8조(업무협조) 운영책임관은 재</u> <u>난문자방송----- 제도 ----</u> ----- <u>필요한 경우에</u> <u>는 개선사항-----</u> ----- ----- -----.